

【 주간이슈 】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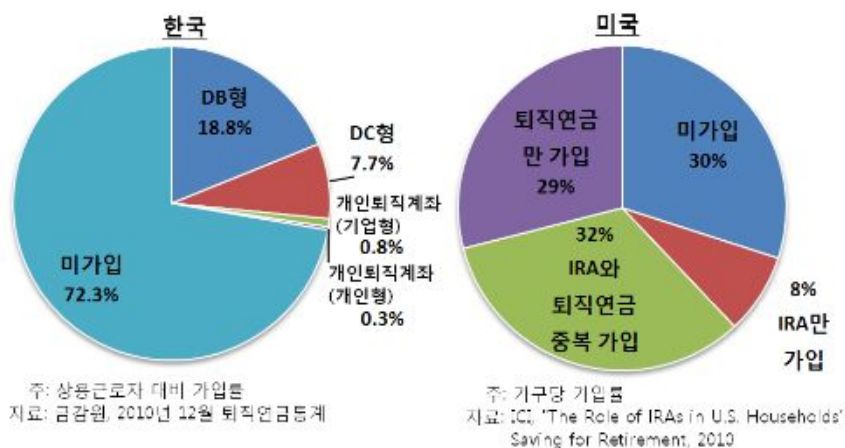
- 개인퇴직계좌가 직장이동, 퇴직 및 중간정산 발생시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연금)의 자산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보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세제지원 미흡 등으로 가입이 미진한 실정임.
- 미국의 경우 다양한 IRA제도와 세제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IRA가구 가입률이 41%에 이르고 은퇴자산에서 IRA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등 IRA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보험연구원(2010)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되었으며, 상당수 응답자들이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직종별로 세제지원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향후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퇴직연금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향후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종사자 등의 가입자격 확대에 대비하여 미국처럼 직군별 또는 소득계층별로 소득공제 수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기적으로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세제체계를 이원화하고 개인퇴직계좌 납입·운영·급부 단계별로 세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1.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 필요성

-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인해 이직자,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퇴직자금을 은퇴자금화하고, 자영업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가 중요시되고 있음.
 - 2011년 중에 개인퇴직계좌의 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확대되고 퇴직급여 일시금 외에 가입자 자신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허용될 예정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추가납입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능 모두를 담당하게 됨.

-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전통적인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퇴직계좌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10년 12월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29조 1,472억 원 중에서 개인형 및 기업형 개인퇴직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8.5%에 불과함.
 - 또한, 각각의 근로자 대비 가입률이 각각 0.3%, 0.8% 수준에 불과함.
 - 반면에 미국은 2009년 말 기준으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이하 IRA) 적립금 규모가 약 4.2조 달러로 전체 은퇴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하며 전체 가구 중 41%가 1개 이상의 IRA에 가입되어 있음.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IRA 가입현황 비교



- 따라서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세제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그 이유는 보험연구원이 잠재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10년),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즉,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30.2%), 수급권보장강화(22.1%), 노후소득필요성 인식 제고(12.3%), 중도인출 완화(10.2%), 제도 형태 다양성 확보(10.0%)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공무원,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등처럼 직군 또는 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데에 48.2%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15%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납입단계의 세제비교

- 우리나라의 개인퇴직계좌 관련 세제체계는 적립금 납입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수급 시 과세하는 EET(Exempt-Exempt-Tax system)형 세제체계임.
 - 즉 적립금(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적립금의 일정부분(400만원)만 소득공제 되고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과세가 이연됨.
 - 또한, 적립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되며, 퇴직금의 수령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체계임.
- 우리나라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적립금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는 DC형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수령 시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1> 개인퇴직계좌의 세제체계

구분		개인퇴직계좌
납입단계		합산하여 연 4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
운용단계		비과세
수령단계	일시금 지급	퇴직소득세
	연금 지급	연금소득세(소득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

□ 미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길어 제도 및 종류가 다양하며,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따라 세제체계도 상이함.

-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EET방식과 TEE(Tax-Exempt-Exempt system)방식을 혼용하기보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EET와 TEE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개인퇴직계좌도 DC형 퇴직연금처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전통형 IRA¹⁾는 EET방식을, Roth IRA²⁾는 TEE방식의 세제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형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5,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2010년 기준)의 적립상한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됨.

□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은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소득공제 차이가 있어 근로자에게는 276,000엔, 자영업자에게는 816,000엔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는 연간 기여액 한도까지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공제한도가 근로자보다 약 3.8배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임.

□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의 경우 세제지원이 보조금 및 소득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2,100유로(2008기준)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받게 되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197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IRA제도로 연간 납입액을 5천 달러로 제한하는 등 주로 중저소득자들이 가입하는 IRA제도임.
2) 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입하는 IRA로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나, 운용시 및 급부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한 액수만 환급해 주게 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고소득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게 됨.

□ 영국의 스테이크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은 연금가입자가 납입한 1파운드 당 0.28 파운드를 정부가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지원하는 보조금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스테이크홀더연금의 연간 납입한도인 2,808파운드를 납입할 경우 790파운드 (=2,808파운드×0.28)를 정부가 지원함에 따라 총 적립금이 3,600파운드가 됨.

<표 2> 납입단계 세제

한국 (개인퇴직계좌)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터연금)
합산 연금소득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소득공제 - 연간 5,000달러(50세 이상이면 6,000달러)	소득공제 - 근로자: 276,000엔 한도 - 자영업자: 816,000엔 한도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 1파운드당 0.28파 운드보조금	소득공제 -2,100유로 한도

주: 개별 소득공제제도를 취하는 주요국과 합산 연금소득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운용단계의 세제비교

□ 우리나라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같은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령단계에서 과세를 적용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적립된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퇴직연금자산으로 적립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운용단계의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할 경우 운용단계의 세금이 이연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관련).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뿐만 아니라 401(K) 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적립금 운용에 따른 운용이익을 비과세 처리 하고 있음.

<표 3> 운용단계 세제

한국 (개인퇴직계좌)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영국 (스태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터연금)
비과세	비과세	특별법인세과세 (납입액 및 운용이익은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이나 2013년까지 유예 예정)	비과세	비과세

□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은 납입액 및 운용이익에 대해 특별법인세(자산운용잔액의 1%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상이함.

- 금융기관에 수탁한 연금관련 신탁재산에 대한 일정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법인세 명목으로 과세하지만 일본정부의 과세유예조치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간 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음.
- 일본의 특별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이자·배당 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금융회사가 대납하여 납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특별법인세라는 용어를 사용함.

□ 영국의 스타이크홀더연금 및 독일의 리스터연금 역시 운영단계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음.

4. 급부단계의 세제비교

□ 우리나라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후 퇴직급여 수령 시에는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로 구분되어 과세됨.

- 즉 일시금 수령 시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일시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부과(분류과세)하며,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수령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천징수 되고 이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고 6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의 IRA는 유형별로 세제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시니어유효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이 적용되어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음.

- 미국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주마다 달라 평균적으로 0.64%p 차이가 존재하며, 조지아 주의 경우 65세 이전과 이후의 소득세율 차이가 1.57%p로 65세 이후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음.

<표 4> 급부단계 세제

한국 (개인퇴직계좌)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영국 (스태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터연금)
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과세가 원칙이나 시니어유효세율 적용	과세 원칙 (단, 연금급부시 공제적용)	비과세 원칙 (한도 초과시 경우 과세)	소득세 과세 원칙 (단, 60세 이상, 유지율이 12년 이상의 경우 수령액의 50% 비과세 적용)

□ 일본은 다른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과세액에서 공적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다만, 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하여 장애급부금이 지급될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사망으로 일시금이 지급될 경우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인당 500만 엔까지 비과세가 적용됨.

□ 반면, 영국은 급부단계에서 일정한 한도 내의 경우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독일은 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 일본과 다름.

5. 개선과제

-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제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미·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합산 연금소득공제제도의 제도분리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퇴직연금제도와 연금저축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법정 퇴직급여제도로써 가입이 반강제화 되는 반면, 후자는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의 잉여자금을 자의의사에 따라 가입 및 기여하므로 분리된 세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행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소득공제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 불입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등 가입자의 특성과 가입목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여 차등화한 세제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현재와 같이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체계를 분리하여 개인퇴직계좌 납입단계, 운영단계, 급부단계별로 세제체계를 별도로 가져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연금수령 기간을 되도록 길게 설정하도록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KiRi